

동아시아 안보협력의 현재와 미래: 한국·베트남 협력과제를 중심으로

김 창 근(통일연구원)

◆ 논문 요약 ◆

본 논문은 동아시아 안보협력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 보면서 동시에 동아시아 안보협력의 틀 내에서 한·베 안보협력의 발전과제를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전반부에서는 OSCE의 전신인 CSCE의 경험과 비교하여 ARF의 성과 및 의미에 대한 평가와 발전과제를 언급하였다. 후반부에서는 ARF에 소지역 및 사안별 안보협력의 활성화가 하위레짐의 역할을 함으로써 ARF 및 지역안보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한·베 안보협력의 발전과제를 제시하였다.

OSCE 처럼 협력안보를 추구하고 있는 ARF는 현재 ASEAN의 지역협력체로서 대체로 성공적으로 역할하고 있다. 그러나 OSCE와 비교할 때 ARF는 보다 제도화되고 정치·경제적 신뢰구축이 진전되어야 하며 아시아안보·유럽안보·세계안보와 상호보완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또한 ARF는 지역안보협력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경주해야 하며 회원국들간의 '장의협'이 촉진되고 소지역 및 사안별 안보협력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베 양국은 정치외교적, 군사안보

적, 경제안보적 차원 등에서 거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ARF의 틀 내에서 소지역 및 사안별 하위레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포괄적 안보협력을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 양국은 단순한 수출과 투자시장 및 교역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아시아의 미래를 함께 짊어질 동반자로 인식하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며, 진정한 우호관계 정립과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의 새로운 토대를 구축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과거 사문제에 선도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 양국은 경제협력의 안보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협력모델을 개발해야 하며, 지역협력체의 모델로 부상하고 있는 ASEAN을 통해서 경제와 안보협력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우방관계를 구축하는데 진력해야 한다. 한국은 동남아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북한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과 ARF의 틀 내에서 양자간 및 사안별 하위레짐의 형태로 포괄적인 안보협력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북한을 상대로 하는 한국외교에 힘이 될 수 있으며 ARF 및 지역안보 발전에 기여하는 의미가 적지 않다.

I. 서론

탈냉전시기의 국제안보는 안보협력(security cooperation) 혹은 협력 안보(cooperative security)를 중시한다. 안보협력은 상호의존(interdependence), 상호신뢰(mutual trust),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¹⁾ 등에 바탕을 두고 안보공동체의 형성을 목표로 한다. 그리하여 안보협력은 각 국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상호이익을 위해 규칙과 규범을 제도화하려는 형태로 나타난다. 냉전시대에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억지(deterrence)나 봉쇄(containment), 핵안정(nuclear stability) 등에 의존했다면, 반면 안보협력의 기초는 재보장(reassurance)을 추구하고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안보위협 요인을 포괄적으로 다루는데 있다.²⁾

안보협력이 강조되는 배경은 탈냉전시기의 전략환경 변화와 관련이 있다. 재래의 군사적 안보개념이 확대되어 '세계안보'(global security)³⁾ 혹은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개념에 입각하여 경제·환경·인권·난민·테러·마약·밀수 등 비군사적 안보의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⁴⁾ 전쟁과 같은 고강도분쟁(high intensive conflict)이 아니라 비군사적 안보의제와 관련된 저강도분쟁(low intensive conflict)에 대한

* 본 논문은 통일연구원과 베트남 한국연구센터(Center for Korean Studies in Vietnam)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베 학술회의 『베트남의 개혁·개방: 한·베 협력 강화를 위한 경험과 함의』, (2001.10.10, Hanoi, Vietnam)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1) Mark M. Lowenthal, "Preventive Diplomacy: Prospects and Issues," *CRS Report for Congress* (March 25, 1993), p. 2.
- 2) 김유남·노병렬, "동북아 안보레짐의 형성 및 가능성: 다자간 안보협의체와의 상호보완성 연구," 韓國國際政治學會, 『國際政治論叢』, 제39집 1호 (1999), pp. 140~141.
- 3) Helga Haftendon, "The Security Puzzle: Theory-Building and Discipline-Building in International Securit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5, No. 1 (March 1991), p. 11.
- 4) 군사적인 면과 비군사적인 면에서 국가안보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로는 전용, "군사안보와 비군사안보의 상관관계," 韓國國際政治學會, 『國際政治論叢』, 제37집 2호 (1997), pp. 229~262 참조.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환경의 변화는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⁵⁾에서의 대표적인 안보협력은 1994년 출범한 아세안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을 들 수 있다. ARF는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 Nations; ASEAN)의 주도에 의해 설립된 아시아·태평양지역 최초의 공식적인 다자안보대화체이다. ARF가 설립된 목적은 역내 국가지도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상호이해와 신뢰를 구축하여 예방외교를 실천하며 역내 국가간의 분쟁이나 대립을 제거하거나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잠재적 위협요소를 최소화시키고 지역안정을 이루고자 하는데 있다. 동아시아 역시 탈냉전시기의 전략환경 변화 속에서 기존의 양자간 군사협력만으로는 지역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한 것이다. ARF는 집단안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안보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동아시아 안보협력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면서 동시에 동아시아 안보협력의 틀 내에서 한국·베트남 안보협력의 발전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⁶⁾ 이를 위해 이 글은 두 부분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첫째,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of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의 경험에 주목하되 특히 그 전신이었던 유럽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의 경우와 비교하여 ARF의 성과 및 의미에 대한 평가와 발전과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안보협력에 관한 국제적인 여러 제의나 성과가 있지만,⁷⁾ 이 글에서는 ARF를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그것은 위에

5) 동아시아의 지리적 범위는 일반적으로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대만, 몽골 등 동북아시아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부르나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동남아 ASEAN 10개국을 포함한다.

6) 동아시아 안보협력과 한·베 안보협력을 굳이 연계하여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한·베 협력강화를 논의하는 학술회의에서 한·베 안보협력의 의미와 과제를 함께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7) 1980년대 후반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협력에 관한 국제적인 제의 내용은 Andrew Mack,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Problems and Projects,"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 11, No. 2 (Summer 1992), pp. 21~34 참조.

서 언급하였듯이 ARF가 아·태지역 최초의 공식적인 다자안보대화체이며, 현재 한국과 북한, 그리고 이 글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베트남이 함께 ARF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둘째, ARF에 '소지역(sub-region) 및 사안(issue)별' 안보협력의 활성화가 '하위레짐(sub-regime)의 역할을 함으로써 ARF 및 지역안보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한국과 베트남 안보협력의 발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ARF의 발전과제를 다룬 뒷 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겠지만 다른 안보레짐과 달리 ARF의 성과가 미미한 근본적인 이유는 안보 문제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루는데 있다. 본래 레짐은 특정 영역에서의 국한된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하며 레짐에 관련된 행위자의 역할 및 관련 이슈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국제제도의 선행 존재 유무가 핵심적인 관건으로 작용한다는 특징을 갖는다.⁸⁾ 이러한 특징을 감안할 때 ARF의 발전 및 지역안보에 촉매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ARF의 틀 내에서 레짐의 본래 의미가 살려질 수 있는 하위레짐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하위레짐의 역할과 효과에 대해서는 이론적이기 보다는 단지 '현상적'으로 국제핵확산금지레짐(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NPR)과 같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을 따름이지만 하위레짐도 레짐의 연장으로 일반화하여 간주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또한 ARF의 참여국 증대가 의사결정구조의 복잡화를 가져와 실제 기구의 효율성을 낮추고 있다는 지적을⁹⁾ 감안할 때 하위레짐의 모색은 소지역 및 사안별 안보협력에 우선 초점을 두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베 안보협력은 ARF의 틀 내에서 하위레짐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접근되고 소지역 및 사안별 안보협력으로 모색되어야 ARF 및 지역안보에 바람직한 것이 된다. 이 글에서 한·베 안보협력이 동아시아 안보협력과 연계하여 언급되는 또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8) 레짐의 특징에 대해서는 김학성,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의 비교』, (서울: 통일연구원, 2000), pp. 114~115.

9) 김유남·노병렬, “동북아 안보레짐의 형성 및 가능성,” p. 163.

II. 국제레짐의 발전과 한계

안보협력 개념이 보편화된 것은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의 이론적 발전에 힘입은 바가 크다. 국제레짐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은 '국가 이익 극대화를 위한 힘의 추구'라는 관점에서 국제관계를 파악했던 1960년대 현실주의학파의 시각으로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증대되기 시작한 '국가간 상호의존성 증대와 국가간 협력 추구'를 더 이상 설명하기 어렵게 된 데서 비롯된다. 국제레짐은 변화되는 국제관계 현실을 안보협력의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새롭게 설명하려는 시도의 연장인 것이다.¹⁰⁾

국제레짐에 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개념은 스티븐 크라스너(Stephen D. Krasner)의 견해이다. 그는 국제레짐을 "국제관계의 주어진 문제영역에서 행위자들의 기대에 의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원칙들, 규범, 규칙과 의사결정과정의 총체"로 정의한다.¹¹⁾ 그에 의하면 국제레짐은 각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변화시키고, 국가이익의 해석을 변화시켜 국제협력을 유도한다고 본다. 또한 국제레짐은 약소국의 외교능력을 강화시키는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각기 다른 국가의 힘의 능력을 변화시킨다고 본다.¹²⁾

크라스너의 개념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국제레짐을 국가의 행위나 잠재적 힘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변수'로 보고 있으며 국제관계에서의 규범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그의 개념이 보편적이기는 하지만

10) Friedrich Kratochwil & John G. Ruggie, "International Organization: a state of the art on art of the st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0, No. 4 (Autumn 1986), pp. 759~760.

11) 여기에서 원칙(principle)이란 사실(fact), 인과관계(causation), 정당성(rectitude)에 대한 믿음이며, 규범(norm)은 행위자들간에 있어 권리 및 의무의 표현으로 정의된 행위기준이다. 규칙(rule)이란 행위에 관한 특정 지시 및 금지를 의미하며, 의사결정과정(decision-making procedure)이란 집단적 결정을 내리거나 집행하기 위한 실천(practices)이다. Stephen D. Krasner, "Struct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 Regime as Intervening Variables," in Stephen D. 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p. 2.

12) Stephen D. Krasner, "Regimes and the Limits of Realism: Regimes as Autonomous Variables," in *Ibid.*, pp. 359~367.

규범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제레짐의 균형된 설명을 위해서는 국제레짐의 기능주의적인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는 로버트 코헨(Robert O. Keohane)의 견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코헨은 국제레짐을 자국이익 중심의 국가간 관계에서 협력을 촉진시키는 일련의 '규제적 제도'로 파악하고 국가간 힘의 분배에 따르는 국제관계와 다국적 기업과 같은 비정부적 행위자들의 행태 사이에 있는 중간자적 성격체로 간주한다.¹³⁾ 그는 국제레짐이라는 '제도'에 의해 행위의 원칙과 규범 등을 상호 합의·규정함으로써 다른 국가의 행위에 대해 안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으며,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행위자의 음모나 협약 불이행을 어렵게 만들어 국제관계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국제레짐은 원칙위반에 관한 보복을 규정함으로써 원칙위반에 따르는 거래비용을 높이고, 항시적이거나 정기적인 협상창구를 개설함으로써 협상에 수반되는 비용을 낮추어 관련 현안들의 연계를 쉽게 한다고 설명한다.¹⁴⁾

코헨의 개념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국제레짐이 국가간 상호이익 추구를 위해 국가협력을 촉구하고 조정한다는 기능주의적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기존 행위자인 국가 이외에 다차원의 다자간 협력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상정해 준 점이다. 국제레짐에 관한 규범적인 개념과 기능주의적인 견해를 종합하면 국제레짐은 특정목표를 두고 국가간 협력을 촉진시키는 '다자간 조정'으로서 이를 위해 행위자들간의 협력의 원칙, 규범, 관행들이 존재하고 상호간 의사결정절차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부연하면 국제레짐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국의 더 큰 이익을 추구하며 국가들의 이익과 기대치를 상호 동등하게 조정함으로써 국제관계의 협력을 제도화 하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¹⁵⁾

13) Robert O. Keohane,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p. 64.

14) *Ibid.*, pp. 88~100.

15) Stephen Haggard and Beth A. Simmons, "Theories of International Regi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1, No. 3 (Summer 1987), pp. 495~496.

이러한 점으로 인해 국제레짐은 국제기구가 지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추구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제레짐은 레짐 자체가 지니고 있는 모호성으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수산 스트레인지(Susan Strange)는 레짐이론을 국제정치학에서의 일시적인 유행으로 간주하여 레짐이론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국제현실정치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본다. 또한 그는 레짐이론이 여전히 국제정치의 규범적이고 정태적인 현상을 강조함으로써 동태적인 국제관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¹⁶⁾

하지만 레짐이론은 이러한 개념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국제관계에서 국가들의 협력양상을 보다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현재 레짐의 구체적인 운영사례도 국제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나 핵확산금지레짐의 경우에서 보듯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보문제와 같은 국가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된 경우에도 이의 해결을 위한 안보레짐(security regime)의 형성에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OSCE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OSCE의 성공적인 운영은 아시아에 있어 또다른 안보레짐의 형성을 유발시켰고 ARF는 비록 적지 않은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레짐으로서의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Ⅲ. 동아시아 안보협력의 현재: ARF를 중심으로

1. ARF 출범 배경과 의의

ARF는 냉전 이후 전략환경의 변화 속에서 아·태지역의 공동안보와 국제적 위상 제고가 절실하다는 점에 공감한 ASEAN 회원국들의 다자안보대화체로서 출범하였다. 냉전 종식으로 지역내 사회주의국가들과의 대립관계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필리핀 주둔 미군기지의 철수에 따라 힘의

16) Susan Strange, "Cave! hic dragones: A Critique of Regime Analysis," in Stephen D. 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s*, pp. 337~354.

공백이 초래되었고 이에 따른 지역 강대국의 패권경쟁 가능성이 새로운 안보위협 요인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동남아를 대상으로 상존해 있던 일본과 중국간 지역패권경쟁 가능성이 부상되었다.¹⁷⁾ 일본은 1980년 이후 동남아 각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적 우위 및 정치·안보분야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해 왔고 중국 역시 동아시아 화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대중화경제권 구상을 실현하고자 노력해 왔던 것이다. 또한 일본과 중국간 지역패권경쟁 추세와 함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같은 지역분쟁이 재연될 소지가 보이자 ASEAN 회원국들에게 역외 국가들과의 안보대화에서 주도권 확보 및 포괄적 안보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이에 ASEAN 회원국들은 아·태지역에서도 유럽의 OSCE와 유사한 초국가적 지역안보협력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ASEAN은 1992년 1월 개최된 제4차 정상회담에서 역외 국가들과의 정치·안보대화를 기존의 아세안확대외무장관회의(ASEAN-Post Ministerial Conference; ASEAN-PMC)의 틀을 활용하여 증진시켜 나간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1993년 7월 처음으로 이루어진 역외 국가들과의 ASEAN-PMC에서 ARF 창설이 합의되었으며, ARF의 제1차회의가 1994년 7월 방콕에서 개최됨으로써 아·태지역 최초의 정부레벨의 다자안보대화체가 공식출범하게 되었다. ARF는 ASEAN의 주도적 역할과 이니셔티브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인 ASEAN-PMC를 활용함으로써 역외국가들의 주도를 구조적으로 배제하게 되었다.

2. ARF의 발전과 성격

제2차회의(1995)에서 ARF 회원국들은 ARF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신뢰구축 증진, 예방외교의 발전, 분쟁해결 모색 등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신뢰구축조치와 예방외교가 중복되는 부문은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회원국들은 ARF의 구조와 관련하여 정부간 활동을

17) C. B. Johnstone, "Paradigms Lost: Japan's Asia Policy in a Time of Growing Chinese Power,"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21, No. 3 (1999) 참조.

중심으로 하는 Track I과 각국의 비정부 유관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Track II의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는 절차를 채택하였다.¹⁸⁾

제3차회의(1996)에서는 ARF 신규회원국 가입의 원칙과 기준이 확정되었다. 회원국들은 신규회원국 가입과 관련 ARF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확대를 가급적 자제한다는 '점진적 확대'원칙을 준수하기로 하였다. 신규회원국은 기존의 ARF 결정과 성명을 준수하고 존중할 것에 동의해야 하며 지리적으로 동북아·동남아·오세아니아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여야 한다는 기준과 회원국간의 합의(consensus)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인도와 미얀마가 신규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제6차회의(1999)에서는 몽골이, 그리고 제7차회의(2000)에서는 북한이 신규가입함으로써 현재 23개 국가가 ARF에 참여하게 되었다. 역외국가로서 파키스탄과 영국·프랑스가 가입신청을 하고 있으나, 파키스탄의 경우는 회원국들의 미온적 태도로, 영국·프랑스의 경우는 ARF에 EU 의장국이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EU의 '2중대표성'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승인되지 않고 있다.

ARF회의는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주제에 대해 회원국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중요한 다자지역안보포럼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며, ARF의 기능도 신뢰구축단계에서 예방외교단계로의 진전을 모색하는 수준으로 향상되고 있다. 그동안 의장성명에서 언급한 주요 의제로서는 한반도문제, 동남아비핵지대조약, 화학무기협정,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CTBT), 대인지뢰 사용금지문제,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 등 군축 및 비확산문제, 범세계적 안보 이슈, 남중국해 영유권문제, 수색 및 구조협력, 평화유지 등이 다루어졌다.

18) Track I은 공식적인 정부간 대화채널로서 ARF각료회의, ARF고위관료회의, 그리고 회기간회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료회의는 제1트랙의 핵심구조로서 회원국의 행위를 지배하는 규범을 정의하고 전반적 방향을 제시한다. 고위관료회의는 각료회의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Track II는 정부레벨의 공식회의가 갖는 결함과 민감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비공식적 민간의 포럼으로서 아·태안보협력협의회(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CSCAP), ASEAN-ISIS(Institute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와 같은 비정부간기구(NGO), 그리고 아·태지역의 두뇌집단들(think tanks)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회기간회의로 개최된 정부간회의와 비정부간회의에서는 신뢰구축, 수색 및 구조, 평화유지활동 등에 관한 논의가 구체적인 방안 제시와 함께 진행됨으로써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축적해 나가면서 다자지역안보협력에 필요한 기초를 마련해 가고 있다.

현재 ARF는 아·태지역내 주요 국가 및 EU 의장국이 참석하는 최초의 유일한 정부간 공식 다자지역안보협의체로서 정부간 정치·안보대화의 장이 되어 있다. ARF는 ASEAN에 의한 주도를 위해 구조적으로 장치되어 있고 역외 참가국들을 차등화함으로써 협의체라기보다는 안보대화체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지역다자안보대화를 기피해 오던 국가들이 포럼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ARF는 역내 국가간의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IV. 동아시아 안보협력의 평가 및 발전과제: OSCE의 경험 비교

1. 성과와 한계

ARF와 OSCE는 지역차원에서의 안보협력을 추구하며 냉전 이후의 안보문제 해결을 전통적인 국가간의 경쟁이 아닌 국가간의 협력을 통해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근본적 차이점이 있다.¹⁹⁾

OSCE는 CSCE라는 '회의체'에서 상설제도화된 다자간 안보협력기구로 개편된 것이다. ARF는 ASEAN의 지역협력체로서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다자간 안보협력을 위한 대화체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ARF를 평가하고 발전과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OSCE의 전신인

19) 주요 논점에 대해서는 박홍규, 『ARF의 발전 방향 평가: CSCE의 경험 비교』, (서울: 外交安保研究院, 2000); 변창구, 『아세안과 동남아국제정치』, (서울: 大旺社, 1999), 제4장 탈냉전과 아세안의 다자안보대화, pp. 117~156; 김유남·노병렬, “동북아 안보레짐의 형성 및 가능성,” pp. 149~156; 徐丙喆, 『유럽 安보環境의 변화와 安보體制의 발전 방향』, (서울: 外交安保研究院, 1997), pp. 40~43 참조.

CSCE의 경험에서부터 주목할 필요가 있다.

CSCE는 1973년 헬싱키에서 개막된 이래 2년여에 걸친 협상을 통하여 1975년 8월 35개국 CSCE 정상회담에서 「최종합의서」(Final Act)를 공식조인했다.²⁰⁾ 「최종합의서」는 정치·경제·사회·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의 국가간 협력문제를 포괄하였으며, '신뢰구축과 군축,' '경제협력,' '인권 및 교류협력' 등에 관한 3개의 바스켓으로 구성되었다. '신뢰구축과 군축'의 경우, 초보적이지만 대규모 군사 기동훈련 사전 통보, 훈련참관; 군인사의 방문교환 등 구체적인 신뢰구축 방안들이 명시되었다. 「최종합의서」가 조약 또는 협정서가 아니라 단순한 '공동정책표명'(statement of common policy)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이러한 신뢰구축조치들은 회원국들에 의해 충실히 이행됨으로써 당시 냉전적 대치상황에 있던 유럽에서의 신뢰구축에 기여했고 유럽안보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토대가 되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CSCE의 「최종합의서」가 안보문제를 단지 군사문제로만 보지 않고 경제·문화·인권 등 포괄적 안보개념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종합의서」는 코헨이 지적한대로 '포괄적 호혜성'(diffuse reciprocity)에 근거하여 장기적이고 다양한 사안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을 강조하고 상호협상을 통해 이를 조정함으로써 협력의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거둔 것이다.²¹⁾

초기의 기초적인 신뢰구축조치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자 CSCE는 그간 신뢰구축조치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1977년 10월에서 1986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친 후속회의를 통해 「스톡홀름협약」(Stockholm Document)을 채택했다.²²⁾ 「스톡홀름협약」은 '제2세대 신뢰구축조치'로 간주되는 현장검증, 훈련계획의 상호교환, 규제조치 등을 포함함으로써 단순한 신뢰구축의 의미를 넘어 '신뢰·안보구축조치'(Confidence and Security-Building Measures; CSBM)로 평가되었다.²³⁾ 이 협약은 군사적 투명도와 상호신뢰감을 제고하고 군축협상에

20) John Fry, *The Helsinki Process: Negotiating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1993) 참조.

21) Robert O. Keohane, "Reciproc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0, No. 1 (Winter 1986), pp. 1~27.

22) SIPRI Yearbook, 1987, Appendix 10A 참조.

필요한 분위기 조성에 무엇보다 기여하였다.

CSCE는 1990년, 1992년, 1994년, 1999년의 4차에 걸쳐 「스톡홀름 협약」에 기초하여 5개 분야(국지위기 발생시 안정조치, 안보의 정치·군사적 측면에 관한 행동강령, 재래무기 이전 규제원칙, 비확산 규제원칙, 군사정보 교환)와 5개 실천항목(일반, 투명성, 제약, 신뢰강화, 이행검증)을 중심으로 신뢰구축조치들을 보다 체계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95년 CSCE는 조기경보, 예방외교, 그리고 위기관리에 중점을 둔 상설제도화된 다자간 안보협력기구인 OSCE로 전환되기에 이르렀다.

OSCE의 초기 단계와 비교할 때, 유럽에서와 같은 「최종합의서」 없이 출발한 ARF는 신뢰를 다자지역안보협력차원에서 제도화하는 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논의와 협의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RF가 신뢰구축을 제1단계 목표로 한 것은 지역다자안보협력을 위한 기반구축이라는 점에서 볼 때 성과가 있고 현재 신뢰구축단계에서 예방외교단계로의 진전을 모색하고 있는 것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ARF는 구체적인 신뢰구축조치들을 취할 근거가 여전히 불명확하고 예방외교를 실행할 수 있는 자체의 제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ARF는 군비감축과 같은 예방외교 단계로의 실질적인 진전이 쉽지 않은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²⁴⁾

ARF는 ASEAN 주도의 설립과 운영이라는 성과도 있지만 동시에 비(非)ASEAN 지역에서의 국가간 갈등이나 안보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출발한 것이다. ARF에 참여하고 있는 강대국들이 ASEAN의 주도를 언제까지 인정할 것인지도 현재로서는 미지수이다. 현실적으로 미국 등 강대국들의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는다면 ARF가 명실상부한 지역안보협력체로 발전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ARF는 참여자의 결속도가 낮은 제한적 레짐(limited regime)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²⁵⁾ 동남아안보대화에서도 중국의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으면 동북

23) 1984년 1월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럽신뢰구축 및 군축회의에서 제시된 6가지 신뢰구축 조치에 대한 제안은 『스톡홀름협약』에서 CSBM의 골간을 이루게 되었다고 한다. 6가지 조치 및 구체적인 내용은 Fry, *The Helsinki Process*, pp. 80~81 참조.

24) 변창구, 『아세안과 동남아국제정치』, p. 145.

아다자안보대화(Northeast Asia Security Dialogue: NEASED)도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ARF의 실질적 발전에는 ASEAN과 강대국들간의 리더쉽 조정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²⁵⁾

동아시아 역내국가들이 지닌 다양성으로 인해 ARF가 지역적 정체성(regional identity)을 바탕으로 한 협력의 기본 토대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도 ARF로서는 부담이다. 종교·문화·인종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국가들은 영토 및 인구의 크기에서부터 경제발전의 수준, 정치체제의 상이성, 종교·역사·문화·인종적 차이성에 이르기까지 그 편차가 크다.

2. 발전과제

이상과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ARF의 발전과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ARF는 그동안의 성과를 제도화하면서 정치·경제적 신뢰구축과 지역안보협력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경주해야 한다. 회원국들은 다양한 신뢰구축조치들에 대한 논의를 보다 활성화하고 합의사항을 낮은 단계에서부터 성실히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ARF는 안보대화를 성공적으로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UN과 같은 전세계적 기구를 통한 재래무기 등록 등의 안보협력을 아시아안보에 활용하는 한편, 경제, 마약, 테러, 환경, 국제범죄 등 포괄적 안보협력에 관한 공동인식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동아시아는 지역경제 차이 및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안보개념을 군사안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특성이 강하며, 따라서 무역·금융·오일문제 등을 포함한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가 중시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경제협력은 동남아시아 안정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안보적

25) Neta C. Crawford, "A security regime among democracies: cooperation among Iroquois n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8, No. 3 (summer 1994), p. 385.

26) 변창구, 『아세안과 동남아국제정치』, pp. 144~145.

의미가 크다. 동아시아국가들은 북미·유럽에 이어 세계경제의 3대 축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고도성장의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동아시아국가들의 역내교역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상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1990년까지 30% 정도에 머물렀던 역내교역 비중은 1995년에는 40%로 증가했으며, 1997년과 1998년 동아시아 경제위기 속에서도 역내교역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⁷⁾ 이는 동아시아지역의 높은 상호보완적인 지역협력의 잠재력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ARF는 경제적 보완관계를 제도적으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협력의 틀을 정치·경제적 신뢰구축의 일환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ARF는 아시아안보, 유럽안보, 세계안보 등이 상호보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동남아시아지역안보는 세계안보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 또한 다자안보대화에는 강대국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간주된다.²⁸⁾ CSCE가 냉전시대 동·서진영간의 안보협력을 추구하였던 것과 달리 ARF는 냉전 이후 시대에 ASEAN이라는 지역협력체를 바탕으로 주변 강대국들간의 안보협력을 주선한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역내 주요 강대국간의 협력도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ARF는 지역차원에서의 독자적인 안보질서를 구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다.

셋째, ARF는 회원국들간의 '장외협의'를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²⁹⁾ 현실적으로 중국 및 일부 ASEAN 국가들이 ARF의 발전 속도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하여 ARF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등 ARF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국가간의 협의를 통하여 중국 및 일부 ASEAN 국가들의 안보관심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넷째, ARF의 틀 내에서 지역국가간의 '소지역 및 사안별' 안보협력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ARF의 운영이 OSCE나 다른 안보레짐과

27) 배궁찬,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 전망』, (서울: 外交安保研究院, 1999), p. 15 재인용.

28) William Tow and Richard Gray, "Asia-Pacific Security Regimes: Conditions and Constraints," *Austral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0 (1995), p. 438.

29) 박홍규, 『ARF의 발전 방향 평가』 참조.

달리 구체적인 활동성과가 미미한 근본적인 이유의 하나는 문제영역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현재 동아시아 역내국가들의 정치·경제·문화 등의 다양성 때문에 안보문제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본래 국제레짐은 레짐이 발생한 문제영역, 특히 좁은 의미에서의 문제해결에 효과적이며, 이는 ARF가 유념하여야 할 사항이다. 국제핵확산금지레짐의 경우, 구성요소는 다양하지만 레짐의 목적은 동일하고 참가국가 모두의 공통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은 레짐운영의 성공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전체적인 의미에서의 레짐의 성공은 NPT(핵확산금지조약)레짐이나 MTCR(미사일 기술통제체제)레짐과 같은 하위레짐에 의하여 보다 촉진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³⁰⁾ 따라서 ARF의 틀 내에서 하위레짐으로서의 소지역 및 사안별 안보협력의 모색은 ARF의 발전은 물론 지역안보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ASEAN이 주도하고 있는 ARF에서 동남아가 아닌 특정지역의 안보이슈, 예컨대 대만문제, 남중국해 영유권문제, 남북한문제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남북한문제의 경우, ARF는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접적 이해관계 당사자간의 대화체인 NEASED 보다 효율적일 수는 없을 것이다. ARF가 1995년의 제2차회의에서 NEASED와 같은 소지역 다자안보대화를 ARF의 틀 내에서 병행하기로 한 것은 바로 그러한 기대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³¹⁾ 소지역 및 사안별 안보협력은 ARF의 하위레짐으로서의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다섯째, ARF는 북한의 참가를 계기로 동아시아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한반도문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ARF는 북한의 참가가 ARF에서의 한국의 발언권과 영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며 남북한 어느 한 쪽에 치우친 영향과 환경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³²⁾ 남북한은 군사문제 대화시 ARF와 관련되는 의제를 제시하여 상호간의 입장을 사전 조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0) 김유남·노병렬, “동북아 안보레짐의 형성 및 가능성,” pp. 145~149.

31) 변창구, 『아세안과 동남아국제정치』, p. 146.

32) 이서향, 『북한의 ARF 가입 활동평가 및 전망』, (서울: 外交安保研究院, 2001)

참조.

V. 한국·베트남 안보협력의 평가 및 발전과제

1. 성과와 의미

먼저 한국과 베트남 안보협력에서 이루어진 그간의 성과와 의미를 정치외교적, 군사안보적, 경제안보적 차원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정치외교적인 차원에서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재수교를 통해 1975년 국교단절 이후 지속되어 왔던 비공식적 관계를 청산하였다.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과 파병으로 빚어졌던 양국의 불행한 과거는 인사교류를 중심으로 점차 청산과정을 밟고 있다. 1993년에는 보 반 키에트 총리가, 1995년에는 도 무오이 당서기장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1996년 11월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함으로써 양국의 관계개선에 박차를 가하였다. 1998년 12월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베트남 공식방문시 호치민 묘에 들러 과거사에 대한 유감을 표하였으며 21세기 우호친선과 실질적 협력을 약속하였다. 2001년 8월에는 천득령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베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수교 10주년을 앞두고 '21세기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향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한국과 베트남은 2000년 조성태 국방장관이 베트남을 방문한데 이어 2001년 8월에는 재수교 이후 처음으로 베트남 국방장관이 방한하여 한·베 국방장관회담이 열렸다. 베트남전에서 얼룩진 과거를 가진 양국의 국방책임자들은 회담을 통해 한반도 및 동아시아 정세와 양국간 실질적인 군사교류 및 협력관계 증진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양국은 「한·베 국방부간의 방산·군수협력에 관해 양해각서」와 「한·베 국방부간의 군사교육 교류에 관한 양해각서」에 각각 서명하였다.

경제안보적 차원에서 한국과 베트남은 그 어느 분야에서 보다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베트남 유전의 공동개발 성공과 베트남 주식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간 경제교류에 가속이 붙어 있다. 양국간 교역 규모는 1992년 4억9000만 달러에서 2000년 20억1100만 달러로 4배나 증가했다. 2000년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은 17억 달러, 수입은 3억1000만 달러로 13억6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 베트남의 5대무

역국이며, 베트남은 한국의 여섯번째 투자대상국이 되어 있다. 금년 12월 10일자로 베트남과 미국간 무역협정의 효력이 발생됨으로써 베트남은 평균 30~40%에 달했던 수출관세를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되어 수출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경제발전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외환위기로 인해 1998년부터 위축되었던 한국의 베트남 투자는 다시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투자도 노동집약적 제조업 중심에서 통신, 석유화학 분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2. 한·베 안보협력의 제약요인 및 발전과제

그동안 양국은 정치외교적 차원, 군사안보적 차원, 경제안보적 차원 등의 안보협력에서 적지 않은 성과와 의미를 거두고 있지만 양국간에는 안보협력을 심화시키는 제약요인도 없지 않다.

첫째, 한국군의 베트남전 당시 주민학살문제, 한국군 전사자 유해 송환문제 등 과거사문제가 잠복해 있다는 점이다. 과거사문제가 양국의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양국은 진정한 우호관계의 정립을 위한 잠재적 장애를 사전에 제거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다져간다는 의미에서 이 문제에 선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ASEAN이 추구하는 역내국가 주도원칙과 베트남의 안보 및 경제협력의 기본적인 초점이 동남아시아에 있다는 현실이 한·베트남의 안보협력 증진에 '적정한 거리감'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양국간 안보협력의 양적·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ASEAN 및 ARF의 틀과 병행하여 소지역 및 사안별 안보협력을 모색하는 새로운 인식과 방안들이 조명될 필요가 있다.

셋째, 양국간 군사안보 및 경제안보협력에 대한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양국간에 축적된 협력의 경험사례가 다양하지 않다는 점이다. 양국은 상대방의 전략적 입장에서 협력의 새로운 전략과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베트남 및 동남아시아국가들은 중국 및 일본에 대한 안보불안감이 잠재해 있고 자생적 경제발전을 추구하는데 어려움이 내재해 있

는 실정이다. 베트남 및 동남아국가들은 중국과의 영토분쟁, 중국 및 일본의 패권화에 대한 두려움, 화교 및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의 심화가 미칠 여파 등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한국이 하나의 협력대안으로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동남아는 1990년대에 접어들어 정치외교 및 경제안보적으로 한국의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남아는 미국·일본·EU와 함께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이며, 해외투자부문에서 미국에 이어 제2의 투자대상지역이자 1990년 중반 이래 한국의 제1의 해외건설 수주지역으로 부상되고 있다. 베트남은 비동맹권 및 동남아의 주축이며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주의국가이기도 하다.

넷째, 베트남의 투자환경 개선, 정치·경제협력에 대한 양국주민들의 동반자적 공감대 형성 등도 지속적으로 모색되지 않으면 안보협력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2000년에 외국인기업에 대한 일부 규제 철폐와 외국인 투자법이 개정되어 외국인기업의 시장진출의 길이 넓어지고 현지 진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점차 해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베트남의 환율은 높은 편이며 각종 규제도 많은 편이다. 외환관리와 담보제공 등의 측면에서 외국인기업에 불리한 점이 적지 않다. 6천여개에 이르는 국영기업들의 비효율성, 전근대적인 금융시스템, 일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등도 베트남의 투자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지적된다.

4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지역 및 사안별 안보협력의 모색은 ARF의 발전과 지역안보에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소지역 및 사안별 안보협력은 ARF의 틀 내에서 하위레짐으로서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베 안보협력의 발전과제는 ARF의 틀 내에서 하위레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해 볼 수 있다.

첫째, 양국은 단순한 수출과 투자시장 및 교역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아시아의 미래를 함께 짊어질 동반자로 인식하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 증가와 함께 베트남에 불고 있는 한국에 대한 관심과 관련하여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한국 내부사회에 베트남과의 동반자적 인식을 촉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양국이 '진정한 친구'관계로 서로를 인식하고 양자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노력은 정치외교, 군사안보, 경제협력 등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된다. 베트남의 개방과 경제협력이 증대될수록 한국과 베트남의 인적·물적 교류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한국은 수교 이후 매년 12억 달러 정도의 무역흑자를 기록해 1인당 국민소득이 최근 350~400달러(호치민의 경우 1300달러) 수준인 국가에서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내고 있다. 하노이에는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는 대우호텔이 서 있고 호치민에는 한국의 포스코가 건설한 대형백화점인 다이아몬드 플라자와 한국지원으로 문을 연 증권거래소가 주민들의 가치의식을 변모시키는데 크게 역할하고 있다. 한국의 TV연속극, 영화, 상품 등은 열풍 처럼 번지고 있다. 이러한 외면을 근거로 한국인은 베트남인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와 인식을 가져서는 안될 것이다.

한·베 양국의 학자간 연구교류·협력도 의미가 적지 않다. 한국은 베트남의 도이모이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북한의 변화에 대한 함의를 얻을 수 있으며, 베트남은 한국의 근대화·공업화연구 및 행정개혁과 경제개혁 사례연구를 통해 도이모이정책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베 협력강화를 위한 학제간 논의와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양국은 진정한 우호관계 정립과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의 새로운 토대를 구축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과거사문제에 선도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 베트남정부는 원칙적으로 미래지향적 교류협력을 위해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한국언론에 비친 것과 달리 실제 베트남정부와 국민들은 한국의 베트남 참전으로 인한 과거사문제에 크게 개의치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베트남주민들은 베트남전쟁을 '승리한 전쟁'으로 보며 상대는 미국이었으며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참전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1992년 양국수교시 베트남정부는 '과거는 과거다'는 정책을 표명하였으며, 이후 한국정부는 과거사문제를 제기하며 필요시 보상하겠다는 의사도 표했으나 베트남정부가 원치 않았다고도 전한다. 베트남정부는 과거사문제의 제기로 베트남이 장기적으로 얻을 것이 많지 않다고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³³⁾ 그러나 베트남내 일각에서는 베트남

국민에 대한 한국의 피해보상방법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지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³⁴⁾ 이는 눈 앞에 놓인 경제성장이 시급하기 때문에 과거사문제를 '일단' 접어 두는 듯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과거사문제는 언제라도 부상할 수 있는 것이며 한국의 인권단체에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과거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베트남정부의 공식표명과 관계없이 한국은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조성해 나간다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베트남의 피해 주민과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교류·협력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교육·의료·위생분야에서의 대민지원사업 등 실효성 있는 기여방안을 한국은 적극 모색해야 한다. 현재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전쟁 당시의 피해지역과 주민을 중심으로 한 인도적 지원사업 및 한국유학기회 부여 등과 같은 감정해소 차원의 대민사업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양국은 경제협력의 안보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협력모델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양국이 베트남광구에서 유전 공동개발에 성공한 것은 자원개발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 베트남은 석유·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에너지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 수 있는 자원 보유국이다. 양국은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본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베트남 경제발전에 한국기업들이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철강, 조선, 전자, 농업용기계 등의 분야에서 협력의 여지가 많다. 베트남이 쌀수출국임을 감안하여 한국은 차후 베트남쌀을 무역역조 시정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한국은 베트남 근로자들을 선진수준으로 교육·연수시켜 베트남의 수출산업 육성에 기여하며 발전소·상수도·도로·공장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여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양국에게 대외경제환경 개선과 함께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제개혁, 금융 및 기업의 효율적 조정 등을 통한 내부역량 강

33)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인사들과의 간담회(하노이), 2001년 10월 10일.

34) 판 투이 탕 베트남 외무부 대변인 언급(2000년 4월 27일), 『世界日報』, 2000년 4월 28일자.

화에 달려 있음을 공감하고 이를 위해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하고자 하는 방향설정이다. 또한 양국은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재발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의 역내협력에 공동보조를 취하는 등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³⁵⁾

넷째, 양국은 지역협력체의 모델로 부상하고 있는 ASEAN을 통해서 경제와 안보협력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우방관계를 구축하는데 진력해야 한다. 한국과 베트남은 해외로부터의 침략을 많이 받았고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지니고 있는 역사적 공통점이 있다.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전쟁방지와 평화유지이다. 베트남 역시 도이모이정책의 지속을 위해 중시하고 있는 것이 전쟁의 예방과 평화유지이다. 이를 위해 베트남은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다양한 관계를 유지하며 우호관계를 강화하는데 대외안보의 초점을 두고 있다.³⁶⁾ 양국은 동아시아 역내국가와의 외교다변화·우호증진 및 전쟁예방·평화유지 등의 화두를 중심으로 안보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역사적 경험과 현실적 필요가 적지 않은 것이다.

한반도 안보문제는 한·미관계나 한반도 주변4강의 협조관계 또는 유엔 등 큰 국제기구가 아닌 ARF와 같은 지역안보협의체의 틀 속에서 보장될 수도 있다.³⁷⁾ 한국의 입장에서 전통적으로 북한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과의 다방면에서의 안보협력과 유대강화는 북한을 상대로 하는 한국의외교에 힘이 될 수 있다. 대북포용정책이나 미사일문제 등 대북문제에서 베트남은 중국과 함께 사회주의 유대를 바탕으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은 ASEAN국가 가운데 큰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북한과 사회주의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의 역할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35)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미국사태 이후 동남아 경제동향과 향후 전망,” 『KIEP週刊世界經濟分析』, (2001년 10월 15일), pp. 22~25.

36) 베트남 인문사회과학연구원(National Center for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of Vietnam; NCSSH)의 도 호이 남(Prof. Dr. Do Hoai Nam) 부원장과의 간담회(인문사회과학연구원 회의실), 2001년 10월 11일.

37) 한국은 1991년 아세안의 완전대화상대국이 되었으며 이후 각종 한·아세안 대화채널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 증진방향을 논의하게 되었다. 한국은 1994년 ARF에 참여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ASEAN채널을 통해 공조체제가 갖추어진 ARF에서 안보협력력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도이모이정책과 관련하여 베트남정부는 북한에 대해 도이모이정책의 언급을 정책적으로 자제하고 있으며 북한 역시 도이모이정책을 공식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듯한 입장을 갖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라는 외견상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베트남과 북한 양국은 서로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북한 보다 한국과의 협력이 절실하다.³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베트남·북한관계의 전개는 주목할 만하다. 지난 7월에는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베트남의 천득령 국가주석간에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7월 말 하노이에서 개최된 ARF에 북한이 참석했다. 지난 10월 15일에는 베트남 경제대표단이 방북했으며 10월 18일 평양에서는 「베트남·북한 경제협조합의서」가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경제협조합의서」를 바탕으로 베트남과 북한 양국의 건설적인 경제·무역관계가 모색되고 도이모이정책의 성공적 추진이 어떤 형태로든 북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북한에게 바람직한 것이다. 그것은 북한의 경제개혁과 주민의 생활안정을 바라는 우리에게도 바람직한 일이다.

VI. 결 론: 동아시아 및 한·베 안보협력의 미래

냉전시대 동·서진영간의 안보협력을 추구했던 OSCE(CSCE)와 달리 ARF는 냉전 이후에 ASEAN이라는 지역국가간의 협력체를 중심으로 주변 강대국들간의 안보협력을 주선한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ARF는 아직 다자간 지역안보협의체에 머무르고 있지만 이를 주도하고 있는 ASEAN의 지역협력체로서 성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ARF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st Asian Free Trade Area; EAFTA), 동아시아공동체(East Asian Community), 동북아시아공동체(Northeast Asian Community) 등 일련의 구상이 현실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협력체 결성 움직임과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역내교류·협력은 ARF가 지역안보협력체로

38)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주요 인사들과의 간담회(하노이), 2001년 10월 10일.

발전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ASEAN의 역내 국가들간에 경제 공동체와 안보공동체 인식이 증가하게 되면 ARF 회원국들간의 다자 지역 안보협력에 대한 필요성은 강화될 것이다.

ARF 회원국들에게 신뢰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유럽의 군비통제 경험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ARF는 우선 정치·경제적 신뢰구축 및 지역안보협력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력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제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회원국들간의 '장의협'을 촉진시키는 방안과 함께 ARF의 틀 내에서 지역국가간 '소지역 및 사안별' 안보협력이 적극 모색될 필요가 있다.

소지역 및 사안별 안보협력의 모색은 ARF의 발전과 지역안보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소지역 및 사안별 안보협력은 ARF의 틀 내에서 하위레짐으로서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안보협력은 ARF의 틀 내에서 하위레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필요가 있다.

양국은 단순한 수출과 투자시장 및 교역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아시아의 미래를 함께 짊어질 동반자로 인식하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 양국은 진정한 우호관계 정립과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조성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과거사문제에 선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양국은 경제협력의 안보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협력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협력체의 모델로 부상하고 있는 ASEAN을 통해서 경제와 안보협력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우방관계를 구축하는데 양국은 진력해야 한다. 한국과 베트남은 역사적 경험과 현실적 필요에서 볼 때 동아시아 역내국가와의 외교다변화·우호증진 및 전쟁예방·평화유지 등의 화두를 중심으로 안보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점을 활용해야 한다.

한반도 안보문제는 한·미관계나 한반도 주변4강의 협조관계 또는 유엔 등의 국제기구가 아닌 ARF와 같은 지역안보협의체의 틀 속에서 보장될 수도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전통적으로 북한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과의 다방면에서의 안보협력과 유대강화는 북한을 상대로 하는 한국의 외교에 힘이 될 수 있다. 한국과 베트남간에 정치외교적, 군사안보적, 경제안보적 차원에서 다양한 협력의 진전은 한·베 안보협력의 발전과 동

북아·동남아 지역안보 및 ARF의 진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하나의 과제로 지적할 것은 하위레짐으로서 소지역 및 사안별 안보협력을 한국과 베트남이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는 본문에서의 논의를 통해 기본 관점만을 요약하는 것으로 맺고자 한다. 한·베 안보협력은 좁은 의미의 안보협력 추진에 민감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반면 포괄적 안보협력, 특히 경제안보차원에서 경제협력의 발전 여지는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한·베 안보협력은 포괄적 의미로 접근하며 ARF의 틀 내에서 양자간 및 사안별 하위레짐의 형태로 포괄적 안보협력관계를 심화시켜야 할 것이다. 양국은 한·베 양자와 사안별 레짐에 부합되는 한 두 국가나 특정 사안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면서 이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지체롭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